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방사업관리사를 방위사업관리사로 명칭 변경 및 근거 마련〉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122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현행 국방사업관리사 제도	9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부승찬의원 등 14인
2. 발의연월일: 2025. 2. 13.
3. 회부연월일: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 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 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제처도 2018년 6월 군인이 아닌 자도 응시하는 자격시험은 「군인사법」에 규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근거 규정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에
 ‘방위사업관리사의 자격증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u>
<u>3. (생략)</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제1항제3호의 자격증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③ (생략)</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 현재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군인사법」 제46조의4¹⁾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²⁾에 국방사업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반 확보 및 사업관리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자격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³⁾⁴⁾

-
- 1) 「군인사법」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국가자격 운영)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병과 중 특수기술 직무분야를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개발하고 자격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관 분야의 국가자격을 신설·운영할 수 있다.
- 2)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국방자격의 종목과 등급)영 제60조의5에 따른 국방분야 국가자격(이하 “국방자격”이라 한다)의 종목과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헬기정비사는 기체, 기관 및 전자·통신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2. 심해잠수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다만, 1급의 경우에는 포화잠수와 잠수감독관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한다.
 3. 항공장구관리사는 낙하산 및 생환장구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4. 수중발파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5. 폭발물처리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6.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 및 정보체계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별로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7. 영상판독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8. 국방보안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9. 낙하산 전문 포장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0. 함정손상통제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1. 국방무인기조종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2. 수중무인기조작사는 1급, 2급 및 3급으로 한다.
 13. 탄약안전관리사는 단일등급으로 한다.
 14. 군항공기사고구조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15. 국방무인기정비사는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의 세부종목으로 구분하고, 무인항공기 종목은 1급 및 2급으로, 무인비행장치 종목은 단일등급으로 한다.
 16. 방호기술관리사는 1급 및 2급으로 한다.
- 3) 국방사업관리사 연혁
- '01년 ~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운영
 - * 국방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에 근거하여 자격검정 시행
 - '18. 2월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국가자격화*
 - *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하여, 「군인사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 격상
 - '20. 12월 : 자격업무(시험·교육) 이관(국방대→방위사업교육원)
 - '21. 10월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제도 개선 관련 정책연구*
 - * 한국생산성본부 / '21. 10월 ~ '22. 6월
 - '23. 1월 : 자격 활용성 확대 관련 제도개선*
 - * 업체 제안서 평가 시 자격 우대 적용 등
- 4) 「국가자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4. 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 그러나 「군인사법」 제2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이하 “현역 군인 등”이라 함)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군인사법」의 적용 대상인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현행 법령에 따른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자격제도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직업 분야에서 공공 복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률로써 제한하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한정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임.⁵⁾

이러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그 자격요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법령상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한되는 내용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⁶⁾

또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국방자격 검정의 응시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3급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자격 중 하나로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제1호)을 규정하고 있음.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하 생략)

5)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2 결정례 다수 참조

6) 법제처 2013. 4. 30. 회신 13-0122 해석례, 법제처 2011. 11. 10. 회신 11-0607 해석례 및 법제처 2007. 12. 28. 회신 07-0447 해석례 등 참조

그리고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 장교뿐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또는 단체의 간부도 국방대학교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므로,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도 국방대학교 국방사업관리 기본교육과정에 입학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음.

- 2024년 시험에서는 총 139명이 합격했는데,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군인 및 직원 20명, 국방부 소속 현역군인 및 직원 54명, 방산업체 직원 39명, 그 외 민간인 26명 등임. 동 자격사제도가 방위사업 분야에 정착화됨에 따라 합격자 수도 2021년 35명에서 2024년 139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최근 국방사업관리사 시험결과]

(단위: 명)

회차	종목	계	방사청	국방부 등 (군 포함)	방산업체	기타
3회 (2021년)	계	35	15	15	3	2
	무기체계	24	10	11	2	1
	정보체계	11	5	4	1	1
4회 (2022년)	계	30	11	12	1	5
	무기체계	23	8	11	0	3
	정보체계	7	3	1	1	2
5회 (2023년)	계	67	9	28	17	13
	무기체계	59	9	23	15	12
	정보체계	8	-	5	2	1
6회 (2024년)	계	139	20	54	39	26
	무기체계	107	16	33	36	22
	정보체계	32	4	21	3	4

* 자료: 방위사업청

□ 개정안은 동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자격증의 명칭 또한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여 동법 제14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사업관리사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하는 한편,

현역 군인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법령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동 자격증 검정시험에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다음의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첫째, 현역 군인이 아닌 경우에도 동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동 자격증이 현역 군인에만 적용되는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운영됨으로써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임.

따라서 법적 근거를 방위산업 지원이 입법 목적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응시자격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현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실태와 부합시킴으로써 법률의 수범력을 높일 수 있음.

같은 취지에서 2018년 4월 법제처는 군인이 아닌 자의 자격시험 응시조건을 「군인사법」에서 규정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를 권고한 사실이 있음.⁷⁾

둘째, 현행 국방사업관리사는 ‘국방사업’이라는 광범위한 표현으로 국가전문자격증으로서의 구체적 표현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실제 시험과목 내용은 ‘방위사업’ 위주로 편성되고 있으며, 동 자격증이 방위사업⁸⁾이나 방위산업⁹⁾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방위

7)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사항(2018.4.)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사람이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지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현역 군인 등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군인사법」에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군무원인사법」 등에 현역 군인 등이 아닌 자에게도 국방사업관리사의 검정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국방부 훈령에서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획득자에 대해서는 획득분야 보직시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8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수여) ① 국방사업관리과정 이수한 사람 중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 자격증을 수여한다. ② 자격증 획득자는 획득분야 보직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9) 연구개발사업 참여 방산업체의 제안서 평가시 자격 우대 적용 등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방위사업청예규)

사업관리사로의 변경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¹⁰⁾

□ 다만, 다음의 수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14조제1항¹¹⁾제3호에서는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자격증 운영으로만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격기본법」 제3조¹²⁾와 같이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¹³⁾

제도와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방위사업관리사 제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업관리사 제도의 취지나 업무내용의 대강을 추가함으로써 동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별표 2-1]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평가항목별 평가내용(표준)

중분류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자원보유 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 사업수행 조직 및 직책별 역할/능력, 경력의 적절성을 평가 * 사업수행 조직은 체계개발, 사업관리 등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 (사업 규모에 따른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등 고려)으로 구성되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 화할 수 있도록 조직하였는지를 평가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 및 부족인력 발생시 충원계획의 적절성을 평가

1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지원
2.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3. 그 밖에 방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을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운영의 기본방향)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3.>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13) 개정안 제14조제3항도 이에 맞추어 수정이 필요함.

따라서 「방위사업법」 13조¹⁴⁾ 를 참조하여 ‘방위력개선 및 전력 운영·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으로 수정이 필요함.¹⁵⁾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u>3.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증 운영</u>	<u>3.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유지</u>
	<u>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u>
	<u>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u>
	<u>리·운영</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4) 참고 조문: 방위사업법」 13조(국방중기계획 등)①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5) 「방위사업법」 13조(국방중기계획 등)① 국방부장관은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방위력개선사업분야 및 전력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국방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에 대한 소요의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중기계획 요구서에 대한 보고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개 정 안	수 정 의 건
<u>③ 제1항제3호의 자격증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u>③ 제1항제3호의 자격증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현행 제3항과 같음)</u>

둘째, 동 자격증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은 자격검정 공고, 보수교육, 업무 위탁 등은 대통령령에 직접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방부령에 위임할 예정임.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안)]

- (자격검정 공고)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일 90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방법, 응시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 (보수교육) 방위사업관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업무위탁) 자격검정 시행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협회 또는 단체에 업무 위탁 근거규정 마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함

* 자료: 방위사업청

그러나 국가자격증시험이나 국가자격증 운영에 있어서 시험과목은 시험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고, 법률에서 불가피하게 자격증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최소한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사업관리사의 자격제도 운영현황 및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동 자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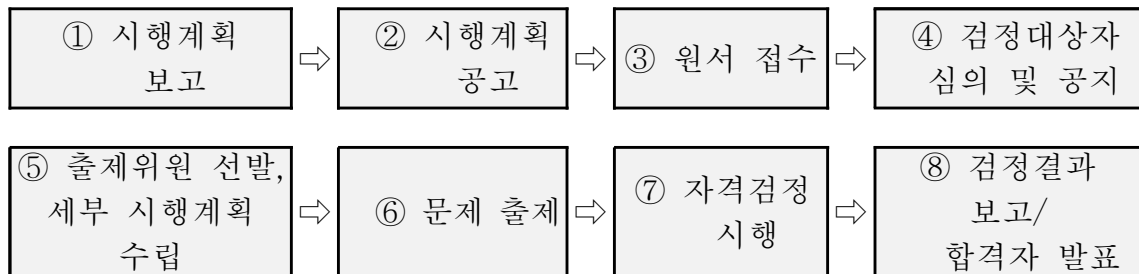
02)6788-5312

※ 참고자료 : 현행 국방사업관리사 제도

○ 개요

- 군인사법 제46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에 따라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국방분야 국가자격
- 현행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인으로 복무한 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목표로 운영 중

○ 시험 수행절차



○ 시험과목(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4)

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시험시간 (문항)
무기 체계	2급	필기시험	① 국방사업관리 ② 국방소요기획 및 평가관리	120분 (12문항)
	3급	필기시험	①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②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I ③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II ④ 프로젝트관리	100분 (100문항)
정보 체계	2급	필기시험	① 국방사업관리 ② 국방소요기획 및 정보보호	120분 (12문항)
	3급	필기시험	① 국방사업 수행체계 및 착수관리 ②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I ③ 국방사업특수관리 영역-II ④ 프로젝트관리	100분 (100문항)